

2026년도 「산업현장 여성R&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」 시행계획 공고

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&D분야의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「산업현장 여성R&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」 사업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3일
산업통상부장관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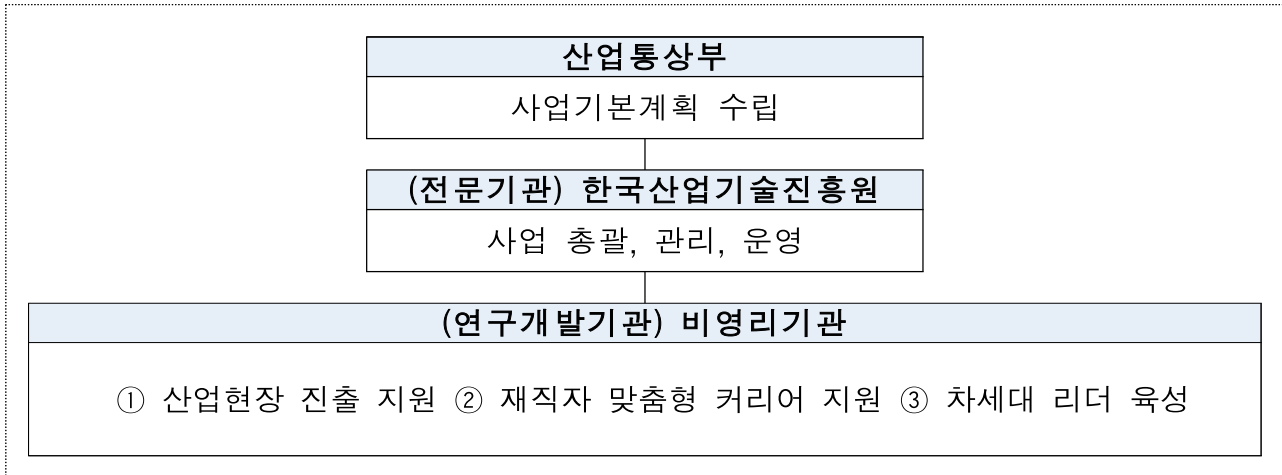
-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&D 분야에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추진

□ 지원내용

과제명	산업현장 여성R&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
지원규모	900백만원 (연구개발비 전액 지원)
지원기간	9개월 (2026. 4. 1. ~ 2026. 12. 31.)
지원대상	비영리기관 (단독 또는 컨소시엄)
공모방식	자유공모
주요내용	① (산업현장 진출 지원) 11대 R&D 중점 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-공학계열 대학생 실무역량 멘토링 지원(현장형 기술문제 해결 프로젝트) ② (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) 재직자 대상 진입-성장단계별 직무교육 개발·운영 추진하고 조직적응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, 학습조직 운영 등 ③ (차세대 리더 육성) 차세대 여성공학 인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리더스 포럼,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온·오프라인 멘토링, 롤모델 발굴 및 사회 초년생,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

*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 사업추진체계



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

□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
-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(100%)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
- * 관련근거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

□ 기술료 징수기준

-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
- * 관련근거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

4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연구기관, 협회,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
-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,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
□ 지원제외 처리기준

○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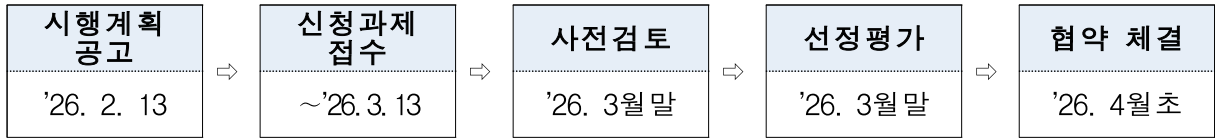
대상	처리기준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기존과제와의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참여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)의 연구개발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 총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하거나,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% 미만인 경우 -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)가 연구책임자로서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,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-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 가능 -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

*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「9. 관련법령」에 따름

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
□ 평가절차

-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



*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우대·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,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,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
-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-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사업 목표 (40)	타당성	•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과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	20
	구체성	•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	20
운영 계획 (30)	수요반영	•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	10
	예산활용	• 연구개발비 구성, 사용계획의 적절성	10
	성과도출	•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	10
수행 능력 (30)	수행경험	•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	10
	참여인력	• 참여인력의 전문성(총괄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등)	10
	조직구성	• 조직구성의 적절성(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)	10

*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“지원대상”로 분류하고,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“지원제외”로 분류함(단,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-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
6 신청방법

구분	내 용													
접수기간	■ 2026. 02. 13.(금) 09시 ~ 2026. 03. 13. (금) 18시													
서식교부	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·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(www.kiat.or.kr) ·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													
접 수 처	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온라인 등록 ※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													
접수절차	■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(연구책임자 포함)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colspan="2">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</th><th colspan="2">신청</th><th rowspan="3">연구과제 신청완료</th></tr><tr><td>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</td><td>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</td><td>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</td><td>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</td></tr><tr><td>① 연구자</td><td>② 연구개발 기관</td><td>연구책임자</td><td>연구개발기관장</td></tr></table>	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연구과제 신청완료	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	① 연구자	② 연구개발 기관	연구책임자	연구개발기관장
	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연구과제 신청완료									
	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										
① 연구자	② 연구개발 기관	연구책임자	연구개발기관장											
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														
<div><p>① (연구자)</p><p>① IRIS 회원가입</p><p>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</p><p>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</p><p>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</p><p>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</p><p>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</p><p>③: 연구책임자 필수(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)</p><p>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</p><p>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</p><p>☎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(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)</p></div>														
	■ 파일업로드 :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업로드													
	-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													
	-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													
유의사항	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													
	- 특히 회원가입, 인증 등 사전절차와,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													
	②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)													
	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													
	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													

구분	내용
	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<u>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</u>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·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기 타	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(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)

7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필수여부	비고
1	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	PDF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2	연구개발계획서	입력/ HWP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3	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4	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확인서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5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6	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·과제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·보안서약서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7	외주 용역 활용계획서	PDF	해당시	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제출
8	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9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	PDF	필수	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

*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

8 유의사항

□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

* RCMS(www.rcms.go.kr)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

□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련 사항

- 고용유지율, 이공계 인식개선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, 고용유지, 인력양성 등을 신청 과제의 성과목표로 연계 필요

□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·편취,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
-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
□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

□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(참여율)

-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어야 함

9 관련법령

□ 근거법령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

□ 관련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,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

※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

10 문의처

시행부처	전문기관	온라인 서류접수/ 시스템(IRIS) 관련 문의
	과제접수, 평가, 절차 등	
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(☎ 044-203-4517)	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(☎ 02-6009-3523)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(IRIS 고객센터) (☎ 1877-2041)